

지정형 산학협력 중점 교원 규정

제정 2013. 10. 1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,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.

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소속 학부(과)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전환을 신청한 후 총장의 승인을 득한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지정 및 해지) ①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교원은 매학년도 12월 31일까지 차기 학년도에 대한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신청서를 소속 학부(과)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은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전환을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검토 후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전환기간은 2년으로 해당자의 요청에 따라 전환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총장은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학협력실적이 저조할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4조(직급 및 책임시수) ①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직급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하고 지정 이전의 직급을 적용하며, 직급별 최저승진소요연한 등은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.

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.

제5조(업적평가)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하되 기간제 임용,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시 업적평가기준 총점수의 30% 이상을 산학협력 분야에서 취득하여야 한다.

제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648, 2013.10.10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업적평가에 관한 경과규정) 제5조에 따른 업적평가의 경우 교수업적 평가분야가 교육, 연구, 봉사 및 산학협력 영역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<별표1>을 산학협력영역으로 평가한다.

〈별표1〉

**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대상
산학협력영역 평가표(안)**

| 항목번호 | 업 적 내 용 | 가중치 | 제한점수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
| 2.21 | 국제특허(등록만 인정) | 200 | 무제한 |
| 2.22 | 국내특허(등록만 인정) | 120 | 무제한 |
| 2.25 | 국내특허 출원 | 20 | 40 |
| | 국제특허 출원 | 40 | 80 |
| | 실용실안 출원 | 10 | 20 |
| | 실용신안 등록 | 40 | 80 |
| | 국내 신기술 | 100 | 200 |
| | 해외 신기술 | 150 | 300 |
| 2.41 | 연구비 수주 총액(작품, 연구활동) | - | 200 |
| 2.42 | 연구계약 수주 건수(해외) | 30 | 90 |
| 2.43 | 연구계약 수주 건수(국내, 교외) | 10 | 20 |
| 2.44 | 연구계약 수주 건수(교내) | 5 | 10 |
| 3.31 | 기술이전(건당 2,000만원 미만) | 30 | 60 |
| | 기술이전(건당 2,000만원 이상 - 4,000만원 미만) | 50 | 100 |
| | 기술이전(건당 4,000만원 이상 - 7,000만원 미만) | 70 | 140 |
| | 기술이전(건당 7,000만원 이상) | 100 | 200 |
| 3.32 | 국책과제 수행 시(사업단장) | 100 | 200 |
| | 국책과제 수행 시(참여교수) | 50 | 100 |
| | 국책과제 수행 시(간사교수) | 70 | 140 |
| | 현장실습 지도 | 5 | 10 |
| | 캡스톤디자인 지도 | 10 | 20 |
| |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(1개 업체 당) | 5 | 40 |

- ※ 1) 항목번호가 부여된 항목은 현행 교수업적평가규정 상 평가항목으로 인정범위 및 가중치는 현행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함
 2)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과목의 담당 교원이 다수인 경우 참여교원 각각에 대하여 취득점수 전체를 인정함
 3)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위 평가표의 평가항목에서 평가점수 합계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함